안전확인 시험 · 검사 진행절차_완구

KATRI

절차	세부내용	비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1. 안전확인 신고용 ① 안전확인 시험·검사신청서(용도 : 안전확인신고용 or 재시험용) ② 제품설명서(컬러사진 포함) ③ 확인서 작성(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제조업자 확인서 - 액체완구 포함 · 방부제 확인서 · MSDS 자료 확인서 : 물질명과 CAS 번호 작성 - 재시험 확인서 · 재시험 진행시 첨부 - 전지 포함완구(단추형 전지 포함) · KC 인증확인 서류 - 2차전지 포함완구 · 2차전지 확인서, 표시시항 · 2차전지 성적서 및 사양서 (보호회로 도면/회로도 및 보호소자부품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안전확인 신고서 2. 추가시험용 ① 안전확인 시험·검사신청서(용도 : 추가시험용) ② 제품설명서 ③ 안전확인 신고서 사본(*신고확인증 번호 있음) ④ 확인서 작성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3. 안전확인 재신고용 **(*기존 안전확인신고를 진행했던 안전인증기관에서만 재신고 가능)** ① 안전확인 시험·검사신청서(용도 : 안전확인 재신고용 or 재시험용) ② 제품설명서(컬러사진 포함) ③ 확인서 작성(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제조업자 확인서 - 재시험 확인서 · 재시험 진행시 첨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안전확인 신고서(*기존 신고확인증 번호 있음)**	- 붙임양식 참고 - 작성문의 : 인증사업팀 · 031-596-5787 **※안전확인신고서상 변경사유(신고인 정보 및 확인신고 내용)가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미진행한 경우, 재신고(기존 신고 번호 사용) 불가할 수 있음**
신청접수 (방문 및 택배)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8번길 19 KATRI시험연구원 3층 인증사업팀** · 031-596-5787	- 접수증 이메일 발송 (수수료, 완료예정일) - 수수료는 접수 후 납부
시험·검사·발급	① 제품 크기, 모양, 색상이 동일한 **완제품 기준** - 2set 제출시 : 업무일 기준 5일 - 1set 제출시 : 업무일 기준 10일 ② 2차전지 포함 완제품 - 5set 제출시 : 업무일 기준 45일	- 시료 보완, 시험 항목 등에 따라 일정 조정 **- 유해원소용출 종분리 추가시험이 발생될 경우 완료예정일 지연**
안전확인 신고접수	<제품검사 합격 후 진행> **- 신고수수료(50,000) + 부본료(5,000) : 55,000원 (VAT 별도)** - 발급기간 : **업무일 기준 +1일**	- 신고문의 : 인증운영팀 · 031-596-5698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	신고서 원본 우편발송(등기)	인수방법 선택

※시험 진행 과정에 시료의 분해 또는 파손되는 시험 항목이 포함되므로, 시험이 끝난 시료는 파손되거나 정상작동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확인 시험 · 검사 신청서 (예시본)

신청일 : 20 . . .

접 수 번 호		KIKO -			세금계산서	수취회사명	㈜0000
신청자	회사명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대표자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사업자번호	123-45-67890
	주 소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담당자	신청 담당자	F A X	031)000-0000		E-mail	0000@katri.re.kr
	T E L	031)000-0000	H. P	010-0000-0000		연락처	031)000-0000
	E-mail	0000@katri.re.kr					

어린이제품명(기준)	완구 (부속서 6)	모 델 명	필수 기재사항
제조국명	필수 기재사항	제조업체명	-국 내제조의 경우:신청자와 제조업체명이 같아야함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제조업 필수) - 수입제품일 경우:영문 또는 한글로 기재
작동성 구분 (필수 선택)	☐ 작동완구 ■ 비 작동완구		
사용 연령 구분 (필수 선택)	※표시사용연령 (5세 이상) [표시사용연령 예 : 4세 이상] ☐ 영.유아용 완구(3세 미만) ■ 어린이용 완구(3세 이상 ~ 8세 미만) ☐ 어린학생용 완구(8세 이상)		
재질 구분 (필수 선택)	■ 플라스틱 ☐ 섬유 ☐ 목재 ☐ 금속 ☐ 유리 ☐ 종이 ☐ 액체 ☐ 겔 ☐ 점토 ☐ 기타 (기타로 선택시 정확한 재질 기입 필요 ex. 모래, 가루 등		
성적서 (부본수)	■ 국문 (부)		
성적서 종류	■ KOLAS 성적서 ☐ 일반성적서		
용 도	■ 안전확인 신고용 ☐ 추가시험용 ☐ 재시험용 ☐ 안전확인 재신고용 ☐ 품질관리용		
성적서 인수방법	☐ 방문 ☐ 우편 ☐ 이메일 ■ 이메일 후 우편		
시료 처리	■ 폐기 ☐ 반환 (시험·검사 후 파괴된 제품) ※ 본 제품에 대하여 **시료처리에 "반환" 선택 시** 시료의 인수통보 후 1개월 내 제품 인수가 없을 경우 폐기처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험·검사항목	시료수	비고	시험·검사항목	시료수	비고

(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접수 시에는 별도로 시험·검사 항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① 시험 · 검사신청서 1부 ② 제품설명서(컬러사진 포함)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검사용 시료 2개 세트(2차전지 사용시 5개 세트) ⑤ 안전확인 신고서 사본(추가시험용인 경우)

○ 시험 진행 중 추가로 관련 서류, 시료, 수수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접수증은 이메일로 송부해드립니다. 수수료는 의뢰신청 접수 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수료 미 입금 시 결과 안내 및 성적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확인 신고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에는 유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에는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 표시를 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모델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본 신청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완구**의 안전확인 신고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신청서입니다.
따라서 **기입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필수)

Katri 시험연구원

문의처 : 인증사업본부 인증사업팀
접수 : 031)596-5695
상담 : 031)596-5787

*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8번길 19 KATRI시험연구원 3층 인증사업팀

QP서식 19-3호 A4(210×297)㎜

제 품 설 명 서 [완구]

제 품 사 진 <컬러 사진 및 완제품으로 첨부할 것(부속품, 포장(케이스, 포장지) 포함>	
제품의 용도 (놀이 및 사용방법)	해당 제품의 사용방법을 간단히 기입

제품 제출시 유의 사항

1. 접수 시 사용연령 확인 필수

① 포장상태의 완제품 제출(박스, 비닐 포함)

② 제품포장상태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연령이 표시된 박스사진이나 도안으로 제출

2. 블록 등의 조립 완구

① 블록 등의 완구는 조립설명서 포함하여 제출

② ①번 항목 불가 시 블록으로 조립한 완성품 사진 제출

③ 완제품사진이 없는 창작활동 블록의 경우 제품설명서 하단의 안전표시란에 " 본제품은 어린이 창작활동을 위한 구성품임"을 표기

표 시(단위포장에 표시할 내용) <아래사항 모두 필수기재, 도안이 있을 경우 도안으로 제출>	
품명	완구
모델명	신청서와 동일
제조연월	2024. 01. 01
제조자명	신청서와 동일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신청서와 동일
주소 및 전화번호	제품하자 및 리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문의처, 소비자 상담실 등
안전 표시(주의·경고 등) (*별첨1 참조)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사용연령	신청서와 동일(표시사용연령)
크기 및 한계 체중	- 코스튬(의류)완구 : 크기(치수) 표기 예)S,M,L 또는 둘레 길이 등 - 승용완구, 의자 등 어린이가 탑승하는 제품 예) 최대하중 "___kg" 로 표기
제조국	신청서와 동일

확 인 사 항 <해당시 기재>		
자석	☐ 사용	■ 미사용
배터리	☐ 1차전지 ☐ 2차전지	☐ 제공함(판매 시 내장된 전지 제공되는 경우) ☐ 제공안함
셀룰로이드 및 셀룰로이드와 같은 형태로 연소하는 재료 (*별첨2 참조)	☐ 사용 (미기재시 해당재료 미사용으로 진행)	■ 미사용

※ 제품 낱개에는 '제조(수입)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안전표시', '지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용설명서에는 한글로 안전표시 및 지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 별첨1 <안전 표시(주의·경고 등) : 제품에 표시사항 인쇄시 필요한 안전 표시, 사용 설명서 선택>**

안전 표시 및 사용설명서	
표시의 정의와 위치	안전 표시는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워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안전 정보는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되어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주.** 안전 표시는 한글로 표시 되어야 한다.
연령 구분 및 표시	이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완구는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단위 포장에 주위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예 ; 적색글씨, 음양각표시 또는 주위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등)으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의상 완구 또는 승용 완구와 같이 크기 및 체중 제한이 있는 완구에는 완구 자체 및 포장에 크기와 체중 등의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완구의 적절한 연령 구분을 결정하는 지침은 부록 **A**에 기술되어 있다. **주.** 연령 구분 및 표시는 한글, 숫자 또는 연령 경고 표시기호 (**그림 1-1**)로 표시되어야 한다.
정보와 설명서	완구의 안전한 사용 또는 조립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지시사항은 그것이 포장에 인쇄되든지 아니면 낱장의 형태로 인쇄되든지 관계없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주.** 사용 설명서(3.)는 한글로 인쇄되어야 한다.
작은 완구 또는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의 문구는 **그림 1-1**과 같은 연령 경고 표시기호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특정한 위해 요인의 표시는 제품,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해야 한다. 그래픽을 고안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원과 가운데 획은 붉은 색으로 한다. · 배경은 흰색으로 한다. · 연령의 범위와 얼굴의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한다. · 연령 경고 표시기호의 직경은 최소 10 m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각 구성요소들은 **그림 1-1**의 구성요소와 비례적으로 맞아야 한다. · 적합하지 않은 범위의 연령을 숫자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0-3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 1-1 연령 경고에 대한 표시 기호**
풍선	다음의 경고 문구를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음. 성인의 통제를 요함. 부풀리지 않은 풍선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해야 함. 터진 풍선은 곧바로 치워야 함."** 알루미늄 호일 풍선, 마일러 풍선(Mylar Balloon)등 금속 재질 및 전기 전도성 재질의 풍선은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천둥 번개시 또는 고압선(전압선) 근처에서는 사용 금지."** **"지하철역, 전철역 및 고전압 설비 근처에서 사용금지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음"**
작은 공 또는 구슬	**a)** 작은 공 또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다음의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공으로 되어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또는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작은 공을 포함하고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b)** 구슬 또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다음의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기술해야 한다.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로 되어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또는 **"이 완구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구슬을 포함하고 있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물놀이 완구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린이의 키가 닿는 물에서만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함”** 제품에는 이 경고 문구를 완구의 몸체와 대조되는 색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글자의 최소 높이는 3 mm 가 되어야 하며 팽창되는 완구의 표시는 공기 팽창 주입구의 한 개로부터 100 mm 이내의 위치에 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광고 복사나 도해도 어린이가 감시 없이 내버려두어도 안전한 완구라는 기술을 하거나 암시하는 내용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구명기구가 아님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유아 침대용 완구 또는 모빌	어린이가 무릎이나 손을 폈을 때 완구를 치우지 않으면 완구에 의해 얽히거나 목이 졸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 벽 또는 천장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만든 모빌은 적절한 조립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에 기록해야 하고 또한 얽힘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유아 침대용 모빌을 어린이가 움켜잡아서는 안 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모빌을 부착한 경우 어린이가 손이나 무릎을 폈을 때 모빌에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벽이나 천장에 부착한 경우 어린이가 일어서서 팔을 뻗친 거리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 공급된 모든 잠금 장치(끈, 가죽 끈, 클램프 등)를 지시사항에 따라 단단하게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끈이나 가죽 끈 등을 부가적으로 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크립짐(crib gyms) 또는 이와 유사한 완구	끈, 코드, 고무 끈, 가죽 끈 등을 이용해 요람, 간이침대, 아기놀이판(playpen) 또는 유모차의 양쪽을 연결해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 또는 크립짐(crib gyms)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린이가 무릎이나 손을 폈을 때 완구를 치우지 않으면 완구에 의해 얽히거나 목이 졸릴 수 있음”**(**3.2, 3.3** 참조) 또한, 완구의 구조, 강도, 설계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완구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아울러 이 경고 문구를 표시하게 된 특별이유(예 : 불충분한 강도)에 대한 주요설명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끈, 코드, 고무 끈, 가죽 끈 등을 이용해 유아 침대, 아기놀이판의 양쪽을 연결해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크립짐(crib gyms) 그리고 활동 완구 등과 같은 완구)는 적절한” 조립과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시사항에 기록해야 하고 또한 얽힘이나 목 졸림과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이 완구는 어린이가 입에 넣어서는 안 되며 어린이의 얼굴과 입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위치시켜야 한다. · 매트리스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유아 침대의 경우 높이를 너무 높게 하면 완구가 어린이에게 닿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완구가 장착된 상태에서 유아 침대의 난간을 내려서는 안되며 어린이를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 공급된 모든 잠금 장치(끈, 가죽 끈, 클램프 등)를 지시사항에 따라 단단하게 부착하고 자주 점검한다. · 유아 침대 또는 아기놀이판에 끈이나 가죽 끈 등을 부가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끄럼틀, 매달린 그네 및 고리, 곡예용 그네 로우프, 대들보에 부착된 유사 완구 및 어린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된 기타 완구는 정기적으로 주요 부품들(대들보, 고정쇠, 붙박이 등)의 유지와 점검을 알려줄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 완구는 뒤집히거나 떨어질 수가 있다는 위해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설명서에는 또한 조립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조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절한 바닥 표면에 대한 특정한 안내도 나타나야 한다.

음식과 접촉하는 완구	완구 또는 완구의 구성요소가 음식과 접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제품의 사용 전후에 충분히 세척하도록 경고하는 문구를 포장 또는 지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한다.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	성인이 조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완구의 포장에 기술해야 한다. 성인이 조립해야 하는 완구와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나 날카로운 끝이 있거나 작은 부품으로 구성된 완구가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성인이 조립해야 한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모조 보호 장구	보호장구(예 : 산업용·운동용·소방용 안전모, 눈 보호구 등)를 모방한(simulated) 완구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사고발생 시 보호받지 못함" 또는 "경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함,"** 선글라스를 모방한 완구는 자외선에 대한 차단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다음의 경고 문구를 제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며 선글라스로 사용할 수 없음, 야외에서 사용시 햇빛에 의한 안구 화상의 위험이 있음." 또는 "경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으며 선글라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선글라스용도로 사용시 심각한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기능성의 가장자리와 끝을 포함하는 완구	기능 완구의 필수 요소인 쉽게 닿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끝을 포함하는 36개월 이상 9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완구는 포장에 날카로운 가장자리 또는 끝이 있음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기능 완구	제품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어른의 직접적인 감시하에서 사용되어야만 함"** 또한, 사용설명서에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및 예방 조치 사항과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완구 롤러스케이트와 완구 스케이트보드	완구 롤러스케이트와 완구 스케이트보드는 몸무게가 20 kg 이하의 체중을 가진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든 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안전모 및 손목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또한, 사용 설명서에는 이것을 타는데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사용자 및 제 3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추락 및 충돌을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일부 표시사항이 추천되는 보호장구(안전모, 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에 대한 정보도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발사체 완구	발사체가 있는 완구의 포장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눈이나 얼굴 쪽으로 겨누지 말 것."** 또한,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하는 발사체 이외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의 위험에 대해 주의하도록 사용법에 명기해야 한다.
완구 연	완구 연 또는 끈으로 연결되어 비행하는 완구 제품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천둥 번개시 또는 전압선 근처에서는 사용을 금함"**
완구 자전거	제품 및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탈 것."** 또한, 사용설명서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완구 자전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브레이크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함을 기술해야 한다.
격발 장치	격발장치가 있는 완구의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눈이나 귀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주머니에 격발뇌관이 흔들리게끔 갖고 다니지 말 것."**

순간적으로 높은 소리를 내는 완구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고! 귀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지 말 것. 잘못 사용시에는 청력이 손상될 수 있음.”**
단섬유를 포함하는 완구	직물바닥에 심어진 50 mm 이상의 곧은 길이의 단섬유를 가진 완구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주의! 긴 털로 인하여 10 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부적합함”**
승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끄는 완구	가장 높은 부위가 150 mm 이상의 것은 타지 않도록 주의 표시를 할 것.
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다음 주의내용의 의미가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a)** 언덕길에서 사용금지 **b)** 유아 등을 좌석에 태우고 미는 손잡이를 누르지 말 것. **c)** 계단, 마루 등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 또는 옥외에서 사용에 대한 주의 **d)** 화기가 있는 곳, 고온의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을 것. **e)** 비를 맞지 않게 할 것.
전등선을 사용한 것	정격 소비전력 및 정격 전압을 사용할 것.
건전지를 사용한 것	제품에 극성을 표시할 것.
열을 내는 제품	열발생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접착제 및 용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안전 관련 사항과 피부접촉 및 입으로 삼켰을 때의 응급조치 사항 등을 표시할 것
비누방울액 등 액체 완구	**“주의! 입에 넣거나 빨지 말 것”**
식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	**“경고. 완구를 포함하고 있음.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 사용되어야 함”**
전동 승용 완구	전동 승용 완구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는 완구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명서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최대 중량 혹은 연령 제한, 혹은 이 두 가지 모두 **b)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 문구** ⅰ) 상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의 감시 하에 사용되어야 함. 자동차가 있는 길거리나, 가파른 경사나 계단 근처, 수영장 혹은 기타 물 근처에서 사용을 금함. 신발을 착용하여야 하고, ____인 이상 탑승하지 말 것. ⅱ) **화재의 위험이 있음**. 정해진 위치에 장착할 것. 오직 ____과 교체하시오. (주: 이 경고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모든 퓨즈나 회로 보호 장치가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제조자는 부품 번호 또는 동등품을 기술해야 한다.) **c)** 제조자가 제시한 전지만을 사용
완구 상자	사용설명서에 적절한 조립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조립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덮개의 지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지지대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액체를 채운 치아 발육기	냉동장치 속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에 놓아두면 안됨”**

완구 스쿠터	- 최대 사용 체중이 20 kg인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을 사용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최대 20 kg"** **"경고!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체중이 2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 - 최대 사용 체중이 50 kg인 어린이용 완구 스쿠터는 다음 사항을 사용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최대 50 kg"** **"경고!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체중이 50 kg 을 초과하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시오"** - 사용자 및 제 3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낙상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에는 완구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상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정보가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 위에서 지시한 경고 문구 · 접을 수 있는 스쿠터의 경우 안전하게 접거나 펴는 방법 · 모든 잠금 장치를 잠그고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를 줄 수 있는 문구 · 공용 도로 및 보도에서의 사용에 대한 위험성 · 헬멧, 장갑,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와 같은 보호 장구의 사용에 대한 권장사항
자성/전기 실험 세트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다음의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한다. **"경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이 제품은 작은 자석(들)을 포함하고 있음. 삼킨 자석들은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자석을 삼킨 경우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 다만, 이 경고 문구는 모든 자석이 자속 지수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자속 지수가 50 kG^2mm^2 (0.5 T^2mm^2) 미만이거나, 작은 부품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자석부품 또는 제품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기 실험세트	실험세트는 외부 포장에는 **제1부 5. 표시**에서 요구한 표시 외에도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경고! 8세 이상 어린이만 사용할 것."**
전동 완구	전동 완구는 적용 가능한 경우 안전한 전지 사용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지시서는 다음의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 전지를 삽입하고 제거하는 방법 · 재충전할 수 없는 전지는 재충전하면 안 된다. · 재충전할 수 있는 전지를 충전할 때는 어른이 감독해야 한다. · 재충전용 충전기의 충전상태 표시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과충전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 오래된 것과 새 것 또는 다른 형태의 전지들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 · 완구로부터 다 쓴 전지를 제거해야 한다. · 전원 공급 단자를 단락시켜서는 안 된다.
가연성	완구용 가장복 및 어린이가 착용하도록 만든 완구 / 어린이가 들어가도록 만든 완구 중 화염 전파 속도가 10 mm/s 에서 30 mm/s 사이일 경우, 완구 및 포장 용기 모두에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기 **"경고! 화기로부터 멀리 할 것."**

* 별첨2 가연성 일반 요구사항

다음과 같은 재료는 완구 제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바니시, 페인트, 접착제, 탁구 및 이와 유사한 게임에 사용되는 공을 사용할 때를 제외한 셀룰로이드(셀룰로스 니트레이트) 및 셀룰로이드와 같은 형태로 연소하는 재료. 완구가 **4.2** 에서 **4.5**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면, **4.2** 에서 **4.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 불꽃에 가한 특정 재료도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고려된다. - 화염 접촉시에 표면 연소만을 일으키는 파일 표면으로 된 재료. 시험 불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파일 표면 부분에 불꽃이 번지는 작은 부분도 보이지 않으면 이 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고려된다. - 인화성이 높은 고체
추가로 완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화성 기체, 인화성이 높은 액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겔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각각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5 mL이며 각각 봉인된 용기에 담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겔 및 조제물 - 필기 도구의 모세관 형태의 구멍이 있는 재료 안에 채워져 있는 인화성이 높은 액체 및 인화성 액체 - No. 6의 컵을 사용한 KS M ISO 2431에 의한 흐름 시간이 38초를 초과하여 동적 점도가 260×10^{-6} m^2/s 을 초과하는 인화성 액체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안전확인 신고서 (예시본)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전화번호 031-000-0000
	주소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확인 신고 내용	어린이제품명 완구(부속서6)	품목분류번호(HS)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비작동완구, 3세 이상 ~ 8세 미만, 플라스틱제	제조업체명 신청서와 동일
	제조국명 신청서와 동일	제조자 제시 모델명 신청서와 동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인

KATRI시험연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1부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신고확인증 번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효기간 : 년 월 일)

KATRI시험연구원장 직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확인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처리기관 (안전인증기관)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